

의정부지방법원 2022. 11. 24 선고 2021나22247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A의 파산관재인 B

원고보조참가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운영

피고, 항소인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화

담당변호사 박석홍

변 론 종 결 2022. 10. 20.

판 결 선 고 2022. 11. 24.

제1 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8. 26. 선고 2021가단104573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2019. 11. 6. 접수 제8973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의

부인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보조참가인은 2012. 11. 23.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와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A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H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H은 원고보조참가인의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2020. 6. 18.경 이자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원고보조참가인은 2020. 9. 22. 중소기업은행에게 30,168,659원을 대위변제 하였다.

다. A은 2019. 11. 1. 이 사건 부동산을 어머니인 피고에게 증여한 후 2019. 11. 6. 피고에게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접수 제89739호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A은 2020. 8. 4. 의정부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2020. 10. 28.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4호는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는 후 또는 그 전 6월 이내에 한 무상행위 및 이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유상행위’에 대해서는 파산관재인이 그 행위를 부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률 제392조 제3항은 ‘제391조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행위인 때에는 같은 호에 규정된 “6월”을 “1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호 나목은 ‘8촌 이내의 혈족이거나 4촌 이내의 인척’을

위 법률 규정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위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파산관재인인 원고는 채무자 A이 파산신청일인 2020. 8. 4.로부터 역산하여 1년 이내인 2019. 11. 1. 특수관계인인 피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에 대하여 부인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부인권 행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이전등기의 원인의 부인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조건부 증여 내지 부담부 증여 해제 주장

1) 피고는, A이 피고 부부 부양의무 불이행을 해제조건으로 하거나 부양의무를 부담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는데, 그 해제조건이 성취되었거나 A이 부담을 이행하지 않아 증여계약이 해제되었으니 위 증여계약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고, 따라서 피고가 A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반환받은 것을 두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4호에서 정하는 ‘무상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피고가 2019. 11.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A으로부터 2019. 11. 1.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이전등기는 A과 2019. 11. 1. 체결한 증여계약에 따른 것으로 추정되고, 한편,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A이 2012. 7.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2012. 7. 18.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A이 피고 부부와 2008. 3. 26.부터 2015. 3. 15.까지 주거를 같이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A이 피고 부부와 같이 거주하였던 시기와 피고가 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던 시기 및 A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다시 증여하였던 시기 사이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② 오히려 이 사건 이전등기의 시기는, 피고와 A이 주거를 달리한 시기보다는 H이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대출금을 연체하기 시작한 시기와 시간적으로 밀접한 점, ③ 조건부 증여 내지 부담부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도 없는 점, ④ 피고는 A의 어머니로, 설령 A이 피고 부부를 부양할 것을 기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기대를 넘어 A이 피고 부부를 부양하지 않는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을 반환받기로 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뚜렷한 자료가 드러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민법 제557조에 기한 해제

1) 피고는, 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이후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었고 그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받게 되었으므로 민법 제557조에 따라 A과의 증여를 해제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이라고도 주장한다.

2) 그러나 이 사건 이전등기가 A의 피고에 대한 증여로 인한 것임은 앞서 살핀 바와 같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A에게 증여한 이후 피고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기현, 판사 윤영수, 판사 서동인

목 록

(1동의 건물의 표시)

시흥시 동

[도로명주소] 시흥시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다세대주택 동

1층 내지 3층 각 83.14㎡

지층 78.10.㎡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2층 호

철근콘크리트조

37.25㎡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시흥시 대 351.1㎡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350분의 23.46 ㎡.

